

## 5. 상속 신고시

지방세법 15조(세율의 특례)

\* 상속,증여 취득은 **다주택이라도 별도의 세율체계 적용**(상속 2.8%, 그 외(증여 포함) 3.5%)

일반 상속신고시 구비서류	
상속재산분할협의서 - <b>검인 불필요,</b>	(양식→ 대법원인터넷등기소-[자료센터]탭-[첨부서면예시]-협의서로 검색) -상속대상자 전원 기재,도장 또는 서명 여부 확인, -상속인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여부도 확인 -미성년자 협의여부(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분할 협의 가능)
법정지분 신고시	-상속자가 단독이거나, <b>재산분할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지분</b> 으로 취득 신고 가능하고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없음. 법정지분율 배우자:1.5, 자녀:1의 비율로 상속
가족관계증명서 (망자=피상속인)	(단, 07.12.31이전사망자는 망자의 제적등본) (→상속인 확인용도) ※상속인중에 다시 사망자가 있을 경우 <b>대습상속이</b> 발생하는 점에 주의한다. 이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(2008년이전 사망시 제적등본)도 필요하다.
기본증명서(망자)	→사망일 확인가능
취득세신고서	※대위등기시 - 대위등기 신청서 사본,가압류가처분 결정서,금전채권증서 ⇒ 채권자대위자가 취득세신고납부한 사실은 납세의무자에 통보한다.

간단암기법! <망가기, 특상가동>	일반상속시 세율특례 시 추가서류	망(자 기준) - <b>가</b> (족관계증명), <b>기</b> (본증명) <b>상</b> (속인 기준)- <b>가</b> (족관계증명), <b>동</b> (본)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

### 1가구 1주택 상속감면시 추가서류

가족관계증명서(상속인)	(직계존비속 확인) 2008년이전 사망은 제적등본/대습상속있는지 확인할 것.
등본(상속인)	(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확인- 등본에 있으면 처남처제도 가족이 된다)
1가구1주택상속 감면 신청서	<b>농비</b> (다가구 85㎡초과일때도 농특세비과세) § <b>농특세법 4조(비과세) 10의4</b>

- ★ **재외국민은 상속 세율특례적용불가(외국인배우자는 가능)** § 지15조1항2호 가목, 시행령29조① 주민등록법
- ★ 고급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
**상속취득세율 일반과세시 2.8% ▶ 1가구1주택 상속취득세 감면시 0.8%과세(취득분2% 감면) 농비**

\*\* **상속인 기준에서만 결정/피상속인 주택수 관계없이**

★ 1가구 1주택의 범위 : “세대별주민등록표”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(상속인의 배우자,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포함하여 판단한다.)

-동거인은 제외

★**상속신고납부기한** -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**6개월이내**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함.

(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 있는 경우 **9개월 이내**) 외국인 - **아포스티유**(등기시 필요)

▶아포스티유(프:Apostille)- 해외영사관에서 발급해주는 문서 공증, 인증서 개념

☞ 실종의 경우도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.

- 실종일로부터 5년(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은 1년)이 지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실종선고를 함.(민법27조)

- 실종일, 실종선고일이 아닌 **실종기간 만료일이 됨**.(민법28조)